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8. 20. 한정애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8. 2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29회 국회(정기회)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 11. 12.)
- 제422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2. 20.)
상정 · 축조심사
- 제427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7. 21.)
상정
- 제429회 국회(정기회)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1. 24.)
상정
- 제430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2. 15.)

상정

- 제433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31.)

상정

-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4. 2.)

상정 · 축조심사

- 제435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5. 12.)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1차 전체회의(2026. 5. 14.)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한정애의원)

현행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서, 합병시점을 지배주주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고평가되고, 지배주주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삼성물산의 주가는 저평가된 시기에 합병을 결정함으로써,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결

정된 반면 저평가된 삼성물산의 소액 주주들은 손해를 입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이뿐만 아니라 최근 소형장비 분야에서 매년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기업인 두산밥캣을 두산에너지에서 인적분할해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 재편이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방안이고, 두산에너지와 두산밥캣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서 상장회사의 합병에서는 예외 없이 기업가치를 시가로 정하도록 강제한 자본시장법을 악용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음.

이에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4 등).

3. 대체토론 요지

없음

4.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준현의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5. 찬반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부대의견

없음